

## 2025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사업모델을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가속화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에 참여할 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자료준비에 충분한 시간 확보 권고
-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집 제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으며 향후 본원 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 ④ 사업 신청 시, 모든 심사결과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고유권한임에 동의하며 심사과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⑤ 선정기업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기업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미준수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참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 [www.gsic.or.kr](http://www.gsic.or.kr)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가속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도약기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모델 고도화 및 투자연계 등 맞춤형 성장가속화 프로그램(액셀레레이팅, Accelerating) 제공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2025. 5월~12월)
- **지원대상 및 선정규모:** 업력 3년 초과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총 40개사

< 분야별 선정규모(안) 및 지원내용 >

구분	①글로벌	②사회문제해결	③기술고도화
분야설명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아이템의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약자 배려,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핵심기술의 개발, 고도화 등 R&D(연구개발)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선정규모	5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15개사
공통 지원내용	①기업 사업모델 진단 ②제품·서비스 고도화 교육 및 컨설팅 ③IR교육 및 컨설팅 ④데모데이 등 투자연계를 위한 행사 ⑤기업 네트워킹 행사 ⑥사업화자금(평균 20백만원) ⑦사회성과측정사회적경제조직 진입 관련 교육 등		
특화 지원내용	①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②판로개척을 위한 입점, 인증 취득 지원 등	①후속 사업 연계를 위한 컨설팅 ②국내 투자 유치를 집중 지원 ③판로개척을 위한 입점 지원 등	①기술진단컨설팅 ②기술개발로드맵 컨설팅 ③중앙부처 R&D 사업 연계를 위한 컨설팅 등

## □ 신청자격

○ (기본요건) 업력 3년 초과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업력) 공고일('25.3.28.(금))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업력 3년 초과기업

\* 자활기업(개인사업자) 업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 경기도 내 본점 소재

- (사회적경제조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경제조직임을 인정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 인/지정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조건부 신청 요건

◆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 경기도 외 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 중간점검('25.8월) 전까지 경기도로 본점 이전 필수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경우, 최종점검('25.11월) 전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하나 이상 인증·등록 필수

◆ [자활기업(개인사업자)] 자활기업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내 법인 전환 필수

※ 조건 미이행 시,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비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성숙도별 지원체계(성장패키지→도약패키지 1년차(사회문제해결 분야)→도약패키지 2년차(글로벌 및 기술고도화))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 중이므로 **붙임 3. 자주 묻는 질문** 확인 후, 신청가능 분야에 맞게 접수 필요함

##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내용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대상 업종의 코드번호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1. 일반유흥주점업(코드번호세세분류 :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코드번호세세분류 :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코드번호세세분류 :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④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수행 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시제품 제작비 등)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별첨 참고)

※ 지자체 지원사업은 동일아이템·동일비목 사용이 아닐 경우

#### 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5년도 타 사업에 선정된 자(기업)

▶ 단, ① 타 사업 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②2025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 ③교육, 컨설팅 등 민간사업지원금(자금) 지원 이외의 간접 제공되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⑥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전분야 참여제한: (2023~2024년) R&D규모화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수혜기업

▶사회문제해결 분야 참여제한: (2023년) 임팩트 테마별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기후테크, 지역사회문제해결 분야 참여기업

▶글로벌 분야 참여제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글로벌 진출 분야 참여기업

#### 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⑧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⑨ 2025년 동 사업 창업기획자의 인력 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⑫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근거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업

#### ⑬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법 위반 확인서 등 제출 필수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사업모델 진단 및 고도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투자 유치 연계, 분야별 맞춤형 성장가속화 프로그램 제공

구분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p>■ 제품·서비스 고도화, 브랜딩·디자인, 지식재산권 취득 등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 평균 20백만원(공급가 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사업화지원금 차등배정(안), 단위 : 원 &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분야</th> <th>등급</th> <th>총합</th> <th>기업 수</th> <th>소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글로벌 사회문제해결</td> <td>S등급</td> <td>22,500,000</td> <td>8</td> <td>180,000,000</td> </tr> <tr> <td>A등급</td> <td>20,500,000</td> <td>9</td> <td>184,500,000</td> </tr> <tr> <td>B등급</td> <td>18,500,000</td> <td>8</td> <td>148,000,000</td> </tr> <tr> <td rowspan="2">기술고도화</td> <td>S등급</td> <td>22,500,000</td> <td>7</td> <td>157,500,000</td> </tr> <tr> <td>A등급</td> <td>20,500,000</td> <td>8</td> <td>164,000,000</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b>합계</b></td> <td></td> <td><b>40</b></td> <td><b>834,000,000</b></td> </tr> </tbody> </table> <p>※ <b>배정방식:</b>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차등배정 예정</p> <p style="text-align: center;"><b>&lt; 비목·세목 정의 및 기준 &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비목</th> <th>세목</th> <th>상세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사업모델 개발비</td> <td>기자재임차료</td> <td>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td> </tr> <tr> <td>무형자산취득비</td> <td>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td> </tr> <tr> <td>전문기활용비</td> <td>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td> </tr> <tr> <td>외주용역비</td> <td>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td> </tr> <tr> <td>재료비</td> <td>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td> </tr> <tr> <td>홍보마케팅비</td> <td>기업의 제품, 서비스, 사업 홍보,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소모성 비용</td> </tr> <tr> <td rowspan="2">운영경비</td> <td>해외출장 여비</td> <td>(글로벌 분야 한정) 국외 출장에 필요한 경비(항공, 숙박 한정 실제 사용비용)</td> </tr> <tr> <td>활동비</td> <td>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 사무용품,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30만원 한도, 최대 210만원(5~11월) 계상가능)</td> </tr> </tbody> </table> <p>※ <b>지급방식:</b> 기업별 사업모델(기술) 진단내용을 바탕으로 사업화자금 집행계획을 사전수립하고, 회계처리기준 등을 근거로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지급 → 건별 적격 증빙을 갖추어 제출 필요(선정자 대상 회계처리기준 별도 교육 제공 예정)</p>	분야	등급	총합	기업 수	소계	글로벌 사회문제해결	S등급	22,500,000	8	180,000,000	A등급	20,500,000	9	184,500,000	B등급	18,500,000	8	148,000,000	기술고도화	S등급	22,500,000	7	157,500,000	A등급	20,500,000	8	164,000,000	<b>합계</b>			<b>40</b>	<b>834,000,000</b>	비목	세목	상세내역	사업모델 개발비	기자재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무형자산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전문기활용비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	외주용역비	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재료비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	홍보마케팅비	기업의 제품, 서비스, 사업 홍보,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소모성 비용	운영경비	해외출장 여비	(글로벌 분야 한정) 국외 출장에 필요한 경비(항공, 숙박 한정 실제 사용비용)	활동비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 사무용품,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30만원 한도, 최대 210만원(5~11월) 계상가능)
	분야	등급	총합	기업 수	소계																																																	
	글로벌 사회문제해결	S등급	22,500,000	8	180,000,000																																																	
		A등급	20,500,000	9	184,500,000																																																	
		B등급	18,500,000	8	148,000,000																																																	
	기술고도화	S등급	22,500,000	7	157,500,000																																																	
		A등급	20,500,000	8	164,000,000																																																	
	<b>합계</b>			<b>40</b>	<b>834,000,000</b>																																																	
	비목	세목	상세내역																																																			
	사업모델 개발비	기자재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무형자산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전문기활용비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																																																				
외주용역비		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재료비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																																																				
홍보마케팅비		기업의 제품, 서비스, 사업 홍보,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소모성 비용																																																				
운영경비	해외출장 여비	(글로벌 분야 한정) 국외 출장에 필요한 경비(항공, 숙박 한정 실제 사용비용)																																																				
	활동비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 사무용품,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30만원 한도, 최대 210만원(5~11월) 계상가능)																																																				
액셀러레이팅	[내부역량 강화 지원] 기업 사업모델 진단, 제품·서비스 고도화 교육 및 컨설팅, 사회성과측정/사회적경제조직 진입 관련 교육 등																																																					
	[투자유치 연계 지원] IR교육 및 컨설팅, 데모데이, 기업 연계 등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 등																																																					
	[분야별 특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분야)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li> <li>■ (사회문제해결 분야) 국내 투자 유치, 후속 사업 연계, 판로개척 지원 등</li> <li>■ (기술고도화 분야) 기술진단·기술개발로드맵 수립·중앙부처 R&amp;D 사업 연계 컨설팅 등</li> </ul>																																																					

\* 지원프로그램은 기업별 사업(기술)모델 진단을 통해 횡수 및 내용 변경 가능

## 4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3. 28.(금)~4. 16.(수) 16:00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www.gsic.or.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내역 >

구분	제출서류명	제출방법	비고
필수	1 참여요건 자가진단표	필수서류 탭에 압축 후, 업로드	수료증 제출
	2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3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 수강내역		
	4 사업 신청 요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범위반사실 조회 동의서 및 요약서		
	7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탭에 압축 후, 업로드	'24년 재무제표 미확정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후 추후 보완 제출
	8 법인등기부등본		
	9 결산재무제표('22~'24)		
	10 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		
	11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당시 선택	12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류	선택서류 탭에 압축 후, 업로드	유효기간 내 서류
	13 가점 증빙서류		5. 심사 및 선정 참고
	14 사업실적 현황		
	15 기타 증빙서류		

\* 제출기한 이후에 사업계획서 수정·보완·교체 불가

□ **참고:** 발표자료 제출 일정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하단 표 사전 확인 필수

### < 발표자료 제출안내 >

- ◆ **제출대상:** 대면심사 대상자 ※ 단, 발표대상자 선정 및 제출 일정이 촉박하므로 사전 제작 권고
- ◆ **자료구성:** 사업계획서 목차를 준수(디자인 자율)하여, 5분 발표분량으로 구성
- ◆ **제출형식:** PPT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폰트 깨짐 등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제출
- ◆ **제출기한:** ~2025. 4. 23.(수) 14시 ※ 기한 엄수
- ◆ **제출처:** 이메일 제출(추후 안내 예정)

## 5

##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총 3단계 절차(요건검토→서면심사→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①요건검토	②서면심사	③대면심사	④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면심사 대상자 확인	▶ 사업계획서 심사 1.5배수 선정	▶ 사업계획서 기반 PT발표(질의응답 포함) 1배수 선정	▶ 최종선정 결과 안내 (사업비 배정 금액 포함)

※ 요건검토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 사업참여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 해지

- (요건검토) 2025. 4. 17.(목)~18.(금)
- (서면심사) 2025. 4. 21.(월)~22.(화)
- (대면심사) 2025. 4. 24.(목)~25.(금)
- (최종선정) 2025. 5월 초(예정)

### □ 심사방법

- ① (요건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 필수 사전교육 수강여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 수강방법 '붙임 3. 자주 묻는 질문' 참고
- ② (서면심사)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하여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대면심사 대상자로 선정

#### < 서면심사 가점 대상 >

연번	가점 대상	가점	제출서류
1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인가)증,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	5점	(유효기간 내)사회적경제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임팩트유니콘 선정기업	5점	별도 제출서류 없음
3	최근 3개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도약패키지, R&D규모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제재 등 중도 협약해지 없이 정상 사업 종료 기업	5점	협약서
4	'23~'2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중 탁월, 우수 기업	3점	SVI측정 확인서
5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인클루전플러스 알럼나이 기업	3점	사업참여 확인서류 (협약서 등)
6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미설치 지역의 경우, 시군 담당과) 추천서	3점	추천서 (붙임 2 양식 활용)

\* 제출이 필요한 가점사항의 경우, 증빙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면심사에만 적용)

③ (대면심사) 사회문제 해결,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장 경쟁력, 예산 타당성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발표 5분, 질의응답 7분)

④ (최종선정) 대면심사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배정\* 완료 후 최종 선정 공고

\* 대면심사 결과 및 예산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심사지표**

○ (요건검토 내용) 신청자격 부합 여부,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등 검토

구분	내용	검토결과
요건 검토	▪ 공고문 내 기재된 신청자격 부합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 제출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자가진단표 기반 신청제외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필수교육 수강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강의명) 투자FM 초보탈출 임팩트투자 핵심 체크 ○ (교육차시) 총 5차시 ○ (교육시간) 1시간 41분 ※ 위 과목 수료증을 저장(캡처)하여 사업계획서 내 첨부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항목) 분야별 특성에 맞게 항목에 따라 심사

< 글로벌 분야 심사항목 >

구분	내용	배점
1. 사회문제 해결(10)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5
	기업의 사업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5
2. 사업계획의 적정성(20)	사업계획과 목표의 연계성이 적절한가?	5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타당한 목표인가?	5
3. 시장 경쟁력(30)	사업실행을 위한 역량(인력, 네트워크, 경험, 자원 등)을 갖추고 있는가?	10
	핵심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거래처 확보가 되어 있는가?	10
	기업의 사업모델(아이템)이 경쟁사 대비 차별적이고 독창적인가?	10
4.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30)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 등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을 위한 기반이 존재하는가?	10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10
	해외 현지 고객 검증에 기반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5. 예산 타당성(10)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가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가?	10
	예산설계는 타당한가?	5
6. 가점(8)	예산구성의 항목이 적합하며, 시장가격에 비해 적절한가?	5
	서면 심사 가점 해당 여부(최대 8점)	8
<b>합계</b>		<b>10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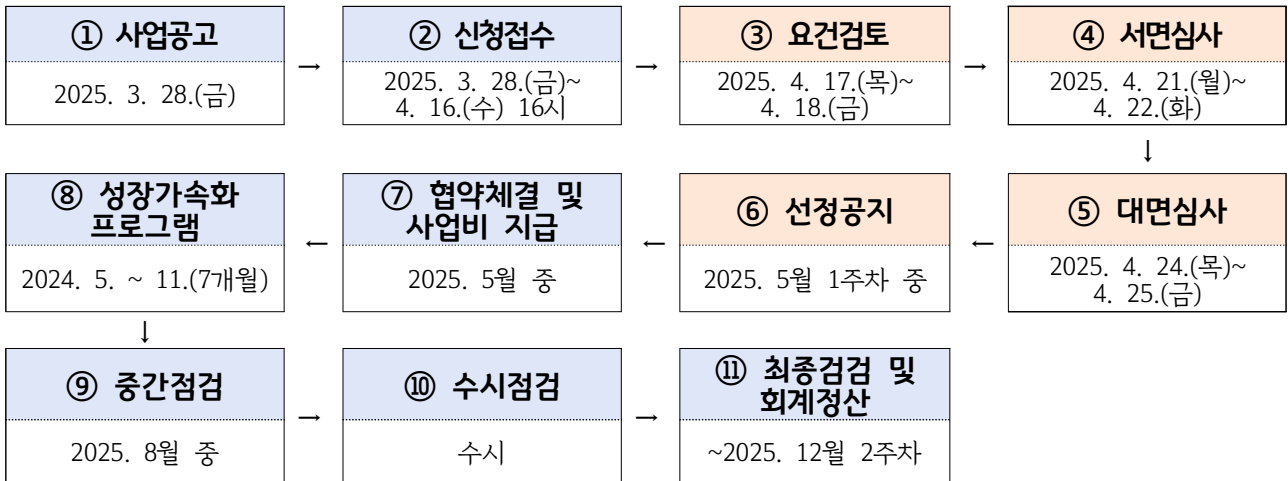
**< 사회문제해결 분야 심사항목 >**

구분	내용	배점
1. 사회문제 해결(20)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10
	기업의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10
2. 사업계획의 적정성(20)	사업계획과 목표의 연계성이 적절한가?	5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타당한 목표인가?	5
	사업실행을 위한 역량(인력, 네트워크, 경험, 자원 등)을 갖추고 있는가?	10
3. 시장 경쟁력(50)	핵심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거래처 확보(전략수립)가 되어 있는가?	15
	기업의 사업모델이 경쟁사 대비 차별적이고 독창적인가?	15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 등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을 위한 기반이 존재하는가?	20
4. 예산 타당성(10)	예산설계는 타당한가?	5
	예산구성의 항목이 적합하며, 시장가격에 비해 적절한가?	5
5. 가점(8)	서면 심사 가점 해당 여부(최대 8점)	8
<b>합계</b>		<b>108</b>

**< 기술고도화 분야 심사항목 >**

구분	내용	배점
1. 사회문제 해결(10)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5
	기업의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5
2. 사업계획의 적정성(20)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타당한 목표인가?	5
	사업계획과 목표의 연계성이 적절한가?	5
	사업실행을 위한 역량(인력, 네트워크, 경험, 자원 등)을 갖추고 있는가?	10
3. 시장 경쟁력(30)	핵심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거래처 확보(전략수립)가 되어 있는가?	10
	기업의 사업모델이 경쟁사 대비 차별적이고 독창적인가?	10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 등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을 위한 기반이 존재하는가?	10
4. 기술성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30)	유사(경쟁)기술 대비 차별점 및 경쟁력이 있는가?	10
	보유 기술(아이디어) 권리화 여부 및 IP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10
	개발(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은 우수한가?	10
5. 예산 타당성(10)	예산설계는 타당한가?	5
	예산구성의 항목이 적합하며, 시장가격에 비해 적절한가?	5
6. 가점(8)	서면 심사 가점 해당 여부(최대 8점)	8
<b>합계</b>		<b>108</b>

□ 전체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시 및 방법: 2025. 4. 8.(화) 14시~15시 30분, 온라인 진행

시간		소요 (분)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14:00	14:10	10	기관 및 사업 소개	
14:10	14:35	25	모집 일정 및 선정 주요내용 안내	
14:35	15:00	25	창업기획자(2개 기관) 소개	기관별 12분
15:00	15:30	30	질의응답	

□ 신청방법: 사업설명회 사전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 사전신청 링크(클릭): <https://forms.gle/hJga5Jhn2PhDjgoW6>

□ 비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를 통해 중계 예정

**①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사업자: 사업자번호 인증)이 가능한 본인(또는 신청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②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고위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③ 심사 중 유의사항**

- 대면심사는 기업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참여인력 중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발표 가능함. 이외의 경우에는 불참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됨(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고지 必)

**④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협약기간 중 확인된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부진, 사회적물의 발생, 사업비 횡령 등 부정한 사유발생 시,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해지,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5 선정자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사업 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
-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창업기획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3년 간 사후성과 등), 평가 등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창업기획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등 정당한 사유(경영부진(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등)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이외 내용은 추후 배포될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8

### 문의처

#### □ (총괄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혼합금융투자팀

- (글로벌 사회문제해결분야) 황 인 대리(031-258-3259 / inh@gsic.or.kr)
- (기술고도화분야) 백연지 주임(031-258-3287 / yjbaek@gsic.or.kr)
- ※ 가급적 메일 문의 요망, 창업기획자 소개는 추후 업로드 예정